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362
----------	-------

발의연월일 : 2026. 3. 11.

발 의 자 : 고민정 · 조계원 · 서미화
이성윤 · 진선미 · 조인철
박성준 · 김원이 · 김준혁
김 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기관, 보증기관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등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채권자인 기관의 높은 신뢰성 및 처분문서의 명백한 존재 등의 이유로 채권·채무의 존부 여부에 관한 다툼의 소지가 작으므로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금지한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자금대출 실행 및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등 채권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대여금 채권과 유사하게 그 채권자 기관의 신뢰성이 높고 처분문서도 명백히 존재하여 채권·채무관계의 성립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실한 것임에도 현행법에 따른 특례의 대상이 되지 않음.

경기침체 장기화로 한국장학재단의 업무와 관련한 채권 추심 업무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필요한 소송절차로의 이행에 따른 소송비용의 낭비(소송절차에의 이행 시 지급명령의 10배의 인지대가 발생함)와 이에 따른 학자금대출 등 채무자들의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 가중을 막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역시 특례의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의 특례 적용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을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로의 이행을 방지하여 소송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고 학자금대출 등 채무자들의 소송비용 부담 가중을 막으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2호를 제2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3호(중전의 제22호) 중 “제21호”를 “제22호”로 한다.

2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 명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및 같은 법 제466조제2항 중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 명령) ① ----- ----- ----- ----- ----- ----- ----- ----- -----.
1. ~ 21. (생략)	1. ~ 21. (현행과 같음)
<u><신설></u>	<u>2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u>
<u>22.</u>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u>제21호</u> 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u>23.</u> ----- ----- <u>제22호</u>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